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손관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09
----------	------

제출년월일 : 2017. 6. 20.

제 출 자 : 손관승 의원 등 8인

1. 개정이유

- 행정 환경 및 의정환경의 변화로 인해 원활한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별 위원수 조정(안 제2조의2)
 - 5개 상임위원회를 4개 상임위원회로 변경
 - 행정자치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통합하여 설치
 - 복지문화위원회를 문화복지위원회로 변경하여 설치
 -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8명 또는 5명 이내에서 각각 7명 이내로 조정
- 위원회 업무 분담과 일관성 유지를 위한 위원회 소관부서 조정(안 제3조)
 - 업무 분담을 위해 평생학습원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로 조정
 - 업무 연관성을 위해 산업지원본부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조정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붙임

- 현행 조례(전문)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이내
2. 기획행정위원회 7명 이내
3. 문화복지위원회 7명 이내
4. 도시환경위원회 7명 이내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그 밖에 의회관련 각종 의안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기획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본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구청(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문화복지위원회

가. 복지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관광본부, 평생학습원,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에 속하는 사항

다. 구청(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도시환경위원회

가.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상하수도사업소,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구청(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선임에 관한 특례) 제7대 안산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간사로 선임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선임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간사로 본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간사로 선임된 후 사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2 신규조문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2(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회운영위원회 8명 이내 2. 행정자치위원회 5명 이내 3. 기획경제위원회 5명 이내 4. 복지문화위원회 5명 이내 5. 도시환경위원회 5명 이내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회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그 밖에 의회관련 각종 의안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평생학습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구청(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소관에 속하는 사항 3. 기획경제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미래전략관, 기획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산업지원본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구청(세무1과, 세무2과)소관에 속하는 사항 4. 복지문화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복지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관광본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구청(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도시환경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상하수도사업소,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구청(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p>부 칙</p> <p>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의2(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이내 2. 기획행정위원회 7명 이내 3. 문화복지위원회 7명 이내 4. 도시환경위원회 7명 이내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회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그 밖에 의회관련 각종 의안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기획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본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구청(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문화복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복지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관광본부, 평생학습원,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구청(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도시환경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상하수도사업소,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구청(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p>부 칙</p> <p>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선임에 관한 특례) 제7대 안산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간사로 선임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선임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간사로 본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간사로 선임된 후 사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김동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09
----------	------

제안년월일 : 2017. 1 . 31.

제안자 : 김동규 의원 등 9명

수정이유

- 위원회 소관 업무를 조정하기 위함.

주요골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조정(안 제3조)
 - 산업지원본부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로 변경
 - 평생학습원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변경
-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선임에 관한 특례 삭제(안 부칙 제2조)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산업지원본부” 를 “평생학습원” 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나목의 “평생학습원” 을 “산업지원본부” 로 한다.

부칙 안 제1조와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 대비표

□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그 밖에 의회관련 각종 의안에 관한 사항</p> <p>2. 행정자치위원회 가.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평생학습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구청(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3. 기획경제위원회 가. 미래전략관, 기획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산업지원본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구청(세무1과, 세무2과)소관에 속하는 사항</p> <p>4. 복지문화위원회 가. 복지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관광본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구청(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5. 도시환경위원회 가.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상하수도사업소,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구청(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그 밖에 의회관련 각종 의안에 관한 사항</p> <p>2. 기획행정위원회 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기획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본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라. 구청(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소관에 속하는 사항</p> <p>3. 문화복지위원회 가. 복지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관광본부, 평생학습원,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구청(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4. 도시환경위원회 가.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상하수도사업소,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구청(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그 밖에 의회관련 각종 의안에 관한 사항</p> <p>2. 기획행정위원회 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기획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라. 구청(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소관에 속하는 사항</p> <p>3. 문화복지위원회 가. 복지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구청(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4. 도시환경위원회 가.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상하수도사업소,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구청(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부 칙</p> <p>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p> <p>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선임에 관한 특례) 제7대 안산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간사로 선임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선임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간사로 본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간사로 선임된 후 사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삭제></p>